

대구예술대학교 국제교육원 운영규정

(제정 2022.08.01. 교무위원회)

(개정 2023.09.06. 교무위원회)

(개정 2024.03.25. 교무위원회)

(개정 2024.06.25. 교무위원회)

(개정 2024.12.02. 교무위원회)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명칭은 대구예술대학교 부설 국제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부설 국제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교육원은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 거문1길 202 대구예술대학교 및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93 대구교육관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사업
2.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한국어 교육 공동 운영 사업
3. 기타 위의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운영 지침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2 장 조직

제5조 (원장) ①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임용할 경우 총장이 이사회에 임용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2024.03.25.)

②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조직) 교육원에는 행정실을 둔다.

제7조 (교직원) ① 본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한다.

② 본원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③ 강사의 자격, 임용에 관하여는 「국제교육원 강사 임용 지침」으로 정한다.

④ 강사는 원장이 수강기수 단위로 임용하되 총장의 결재를 득하고 임용한다.

⑤ 본원의 운영 또는 홍보을 위해 특임교수, 책임교수 및 초빙교수를 둘 수 있다.

<신설2024.03.25.>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8조 (운영위원회)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원장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소집 및 회의)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1. 교육원의 운영 계획 및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및 주요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수강인원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4. 강사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강사 임용에 관한 사항
6. 소관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7. 교육원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장 수강생 모집 및 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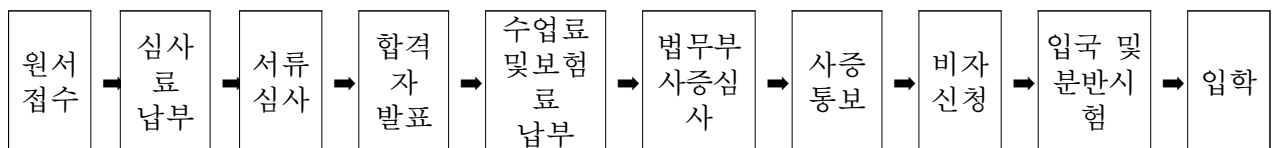
제12조 (모집횟수) 수강생 모집은 연 4회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 (모집구분) 수강생 모집은 지원자의 개인신청, 지원자의 모국 대학(부설 어학교육 관련 기관 포함) 등 관계기관의 추천 또는 주재국 한국 공관의 추천 허가에 의한 국외모집과 국내 어학연수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모집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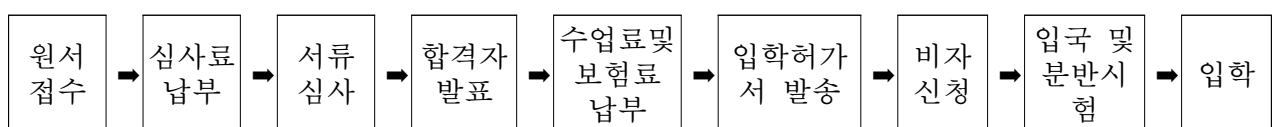
제14조 (지원자격)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중국은 보통고등학교) 이상 졸업 학력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5조 (입학절차) ① 국외모집 지원자는 2개 학기 이상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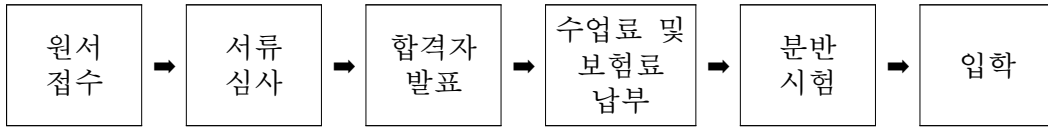
1. 사증번호를 국내 법무부에서 발급받는 경우



2. 사증번호를 국내에서 발급받지 않는 경우



② 어학연수비자(D-4-1) 이외의 기타체류자격을 가진 국내모집 지원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6조 (입학등록금) ① 입학등록금은 입학 수속에 필요한 심사료와 수업료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수업료는 총 연수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수업료를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수강유예) ① 학생이 입학 등록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당해 학기 개시 1주일 전까지 수강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질병,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강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유예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에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제18조 (환불) ① 학생이 등록포기, 입학허가 취소 또는 개인사유에 의한 자퇴의 경우에는 수납한 수업료(심사료 제외)를 [별표1]에 따라 환불하되, 환불에 소요되는 금융기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한다.(개정2024.06.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어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자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제적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수강한 부분의 수업료는 자퇴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③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불신청서와 환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귀국 항공권 등), 환불신청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재등록) 어학연수비자를 소지하고 재학 중인 수강생이 다음 학기 재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통상 학기 종료 5주 전 재등록 공지 기간에 수강료를 납부한 후 일괄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업, 성적, 수료<개정2024.12.02.>

제20조 (수업 시간) 매 수업 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출석부) ① 강사는 매 교시마다 학생의 출·결석을 확인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매주 금요일에 출석부를 행정실에 제출하여 중간 확인을 하며, 학기말에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휴·결강과 보강) 강사는 사정에 의하여 휴강 또는 결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결강 3일전까지 대강 및 보강 계획이 첨부된 결·보강계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갑작스런 결강 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사전에 결강 통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강사를 지정하여 대강하게 하고 사후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제23조 (수업시수 미달자 조치) 수강생의 출석시수가 해당 학기 총 출석 수업시수의 4/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급 과정으로 진급할 수 없다.

제24조 (공결) ①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공결로 처리하고 출석 일수로 인정한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의사의 진단서나 확인서가 있을 경우)
2. 직계 존·비속의 사망 통보를 받은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았음에도 비자 발급지연으로 결석할 경우(개강일부터 수업 15일까지 인정)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제24조1(시험의 구분) 시험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 시험 : 중간 시험, 기말 시험
2. 수시 시험 :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계속적인 학습 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써 수시쓰기, 수시말하기, 단어시험을 포함

[본조신설 2024.12.02.]

제24조2 (성적) 성적평가의 항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4.12.02.]

제24조3 (수료) 평균 성적 70점 이상이면서 총 수업일수의 70%이상 출석인 경우에는 각급을 수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02.]

제 6 장 자퇴 및 제적

제25조 (자퇴) 수강생이 학기 중 자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결석시수 누적자 처리) ① 질병, 자연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결석시수가 누적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결석 8시간 경과 시: 수강생에게 결석시수관련 안내문 송부 및 상담 후 담당자에게 통지
2. 결석 20시간 경과 시: 수강생과 상담 후 1차 경고장 전달
3. 결석 40시간 경과 시: 수강생과 상담 후 2차 경고장 전달
4. 결석 60시간 경과 시: 수강생과 상담 후 3차 경고장 전달 및 서약서 작성
5. 결석 80시간 경과 시: 수강생을 제적처리하고 출입국관리법 제 19조의 4규정에 의거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동신고하고 비자 취소를 요청(단, 진학이 확정된 학생은 예외)

② 수강생이 개인사유로 본국에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시귀국사유서 및 증빙자료(왕복 비행기 티켓 등)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해당일 만큼 제적관련 결석일수에서 제외한다.

제27조 (불법취업 및 아르바이트자 처리) ① 수강생이 체류자격(어학연수 D-4-1 비자) 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수강생이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범칙금 부과 또는 강제퇴거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강제퇴거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적된다.

제28조 (기타 사유에 의한 제적) 처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의 등록을 취소하고 제적, 출국 조치시킬 수 있다.

1. 국내법 위반 등으로 대구예술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2. 한국어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 밝혀지거나 수업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 7 장 재증명

제29조 (재증명 발급 대상) 증명서 발급 대상은 교육과정 재적 또는 수료하였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다.

제30조 (재증명 증명서의 종류) 발급하는 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출결증명서
4. 수료증명서
5. 수강료납입증명서

제31조 (재증명 발급 명의) 모든 증명서는 원장 명의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재증명 교부 대장)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 대장에 등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제 8 장 회 계

제33조 (회계) 교육원의 운영 경비는 교비에산과 교육원 운영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4조 (회계연도)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 (회계집행)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원에서 관장한다.

제 9 장 제수당

제36조(지급대상) 국제교육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37조(대상업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수당 지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② 그 외 총장이 정하는 업무

제38조(적용범위) 제37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별도로 정한다.

제 10 장 기타

제39조(직무의 위탁) 원장은 국제교육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어학연수생 모집과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6.25.]

제40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06.25.]

부칙(2022.08.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9.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지급된 수당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한다.

부칙(2024.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2.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예술대학교 국제교육원 수강료 반환 기준(제18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한국어연수 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 정지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잔여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학습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또는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제적 된 경우	개강전	수강료 전액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 1/3전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 1/2전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 1/2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학기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2’ 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잔여 학기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한다.